#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의 안 번 호 3055

제출년월일: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 첨단전략산업 (인공지능, 바이오 등)을 육성하고자 '19년부터 우수한 혁신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운용 중임

나. 이에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자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 나. 출자개요

## ○ 출자사업

펀 드 명	市 출자약정액	조 성 액	조성기간
미래혁신성장 펀드	1,751억원	3조 6,857억원	'19년~'22년 (조성완료)
서울 Vision 2030 펀드	3,500억원	5조원(목표)	'23년~'26년 (조성 중)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20억원	200억원	'23년(조성완료)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30억원	50억원(목표)	'25년(조성 중)

# 〈 서울시 벤처펀드 출자 방식 〉

운용사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	운용사 선정 및 市 출자 약정액 결정	⇨	펀드 결성	₽	출자금 납입 요청	₽	출자금 납입
(市)		(운용사선정위원회)		(운용사)		(운용사)		(市)

-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 펀드 결성
- \* 투자기간(4년) 동안 출자금 수시 납입→ 회수기간(4년) 동안 출자금 회수

### ○ 2026년 출자계획(안)

펀 드 명	'26년 출자계획액		
합 계	860억원		
서울 Vision 2030 펀드	781억원		
미 래 혁 신 성 장 펀 드	65억원		
녹색기업창업펀드 제 5 호	7억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민생노동국)	7억원		

- ※ 기 조성된 펀드의 '26년 출자약정액 납입 예상액(640억원) 및 '26년 조성 펀드의 市 출자약정액(1.100억원) 1차년도 납입 예상액(220억원)
- 출자재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다. 출자 필요성

- 총 3.7조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 펀드는 '19년부터 '22년까지 조성 되어 첨단산업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 1.538개사에 3조 429억원 투자하여 기업당 평균 19.8억원 투자('24년말 기준)
- 총 5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24년까지 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 '23년 700억원, '24년 810억원을 市가 출자약정하여 2.6조원 규모 펀드 조성 (369개사에 5.703억원 투자하여 기업당 평균 15.5억원 투자('24년말 기준))
  - \* '25년 7월 300억원을 출자하여 신규 펀드 조성 중이며 10월 590억원을 추가로 출자 예정
- '23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는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투자하여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 '23년 조성 후 4개사 27억원 투자('24년말 기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
-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 반영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송정민 (☎ 2133-4757)

# [붙임]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계획(안)

분 야	주 요 내 용	출 자 액
계		860억원
미래혁신성장 펀드		65억원
①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지원	 2억원
②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솔루션 분야 지원	 19억원
③ 창 업 지 원	원천기술, 지식 기반 창업기업 지원	 12억원
④ 재도전지원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 지원	8억원
⑤ 서울바이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23억원
⑥ 문화콘텐츠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산업 지원	 1억원
서울 Vision 2030 펀드		781억원
① 인공지능대전환	인공지능(AI) 기반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기업 지원	75억원
② 디지털대전환	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기술 지원	72억원
③ 서울바이오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유망기업 지원	85억원
④ 첨 단 제 조	첨단기술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 및 신제품 생산기업 지원	124억원
⑤ 창 조 산 업	지식재산권 기반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종합 지원	 153억원
⑥ 스 케 일 업	스케일업 및 해외 진출 지원	184억원
⑦ 첫걸음동행(창업지원)	창업 초기기업, 경영위기·재창업 기업 지원	88억원
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		7억원
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 산업 지원	7억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7억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혁신·성장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7억원

<sup>※ &#</sup>x27;26년도 예산편성, 펀드 운용사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출자액은 변동될 수 있음